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방 송 통 신 설 비 의 기 술 기 준 에 관 한
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·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19545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됨에 따라,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(안 제10조제2항 개정)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,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

나.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(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)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(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)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제69조의2제2항”을 “제69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의 단서 중 “곤란한”을 “곤란한 경우 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설치기준”을 “설치기준 및 비상전원단자 연결 설치기준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이 조 제1항제1호의 건축물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① 이 영은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8조제1항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5조의2 · 제61조 · 제68조제2항 · 제69조제2항 · <u>제69조의2제2항</u> ,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1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, 관로,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9조의2제3항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전원설비) ① (<u>생략</u>)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	제10조(전원설비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

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
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
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
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
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2(구내용 이동통신설비
의 설치대상) ① 「전기통신사
업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
물”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,000
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
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(주
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
한다)

2.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

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
한 경우 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
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
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한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-----
-----대한 전원설비의
설치기준 및 비상전원단자 연결
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
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한다.

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(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·터널·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) <u>② ~ ③ (생략)</u> <u><신설></u>	<u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u> <u>④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이 조 제1항제1호의 건축물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.</u>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2-6433